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第1條(目的) 이 法은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犧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碍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犧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
3. "遺族"이라 함은 犧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3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국내외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眞相調査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 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1. 犧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가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5條(不利益 處遇禁止) ①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犧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犧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年 이내에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聯機關 또는 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國家의 政府와 성실히 交涉하여야 한다.

第7條(眞相調査報告書 작성)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月이내에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眞相調査報告書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作成企劃團을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犧牲者를 慰靈하고 歷史的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敎育의 場으로 활용하며 慰靈祭禮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史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第9條(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政府는 犧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犧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犧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附則 <제6117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